

##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홍보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수준을 인상하기 위함.

### 주요골자

- 상임위원의 월급여를 579,000원으로 인상.
- 월 급여의 40%에 해당되는 직무수당 지급.
- 월 급여와 월 직무수당 합산액의 400% 기말수당 지급.

근거법령(지침) : '9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.

예산현황 : '93상임위원 보수 예산확보 년 13,548천원

### 기타참고자료

-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(전문)
- '93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(발췌)

##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(상임위원대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상임위원대우)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대우는 별표  
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													
<p>제9조(상임위원대우)상임위원 에게는 월 531,000원의 월 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 %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및 월액수당의 100%에 해당 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9조(상임위원대우)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대 우는 별표에 의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별표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임위원대우 (단위 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5%;">금 별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월급여</th> <th colspan="2" style="width: 20%;">상 여 금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직 무 수 당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비 고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기 말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정 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나동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79.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년급여 + 직무 수당) × 1/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100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급여의 40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령에 의 하여 설치 된 각종 위 원회 협의 회의 상임 위원 및 간 사 등 비정 규직 보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금 별	월급여	상 여 금		직 무 수 당	비 고	기 말	정 근	나동급	579.0	(년급여 + 직무 수당) × 1/3	년 100%	월 급여의 40%	법령에 의 하여 설치 된 각종 위 원회 협의 회의 상임 위원 및 간 사 등 비정 규직 보수
금 별	월급여			상 여 금				직 무 수 당	비 고						
		기 말	정 근												
나동급	579.0	(년급여 + 직무 수당) × 1/3	년 100%	월 급여의 40%	법령에 의 하여 설치 된 각종 위 원회 협의 회의 상임 위원 및 간 사 등 비정 규직 보수										